

치매, 도움이 필요하세요?





본 『치매자원안내서』는
치매와 관련한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경기도립노인전문 시흥병원은
어르신들의 건강과 치매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치매지원프로그램은 치매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것(약물) 외에도
치료에 도움을 주거나 치료 후 상태악화 방지 등을 위해 운영됩니다.

치매환자지원프로그램

병원에 입원 중인 어르신과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과 정보를 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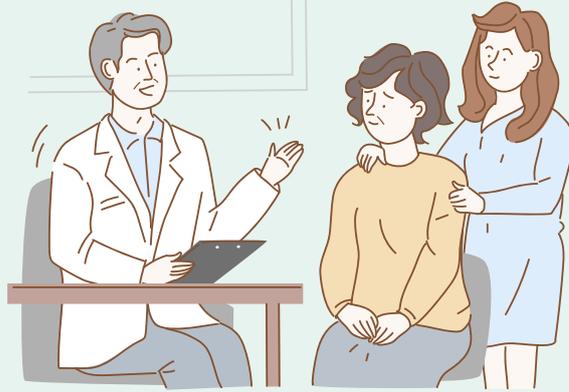
비약물프로그램 : 치매환자의 인지강화를 위해 인지훈련치료, 회상치료, 원예
치료 등을 제공

치매가족자조모임 : 치매 가족의 돌봄부담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정서적 공
감과 힐링 프로그램 제공

치료 후 가정으로 복귀하는 어르신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일상생활적응을 위한 가정방문과 유선상담
- 생활환경점검 및 거주지 환경 개선
- 치매환자 보호자 교육과 심리정서적 지원

치매안심센터, 사회복지기관 등 치매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지역내 치매인식
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치매, 뇌졸중 등 노인성 질환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할 때?

경기도립노인전문 시흥병원

031-500-7100

www.gshospital.com

경기도립노인전문 시흥병원은 치매 및 노인성 질환의 증상관리와 치료를 위해 재활치료센터, 인공신장실, 집중관찰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원 상담이 필요할 때 전화하세요~~

치매와 관련한 도움이 필요할 때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경기도립노인전문 시흥병원	031-500-7100(대표), 500-7112
중앙치매센터	1666-0921
경기도광역치매센터	031-271-7021
시흥시치매안심센터	031-310-5857

시흥병원과 함께 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해 제작에 협력한 기관들

시흥시보건소·치매안심센터	031-310-6062	https://sh.nid.or.kr
시흥시노인종합복지관	031-404-3100	https://shsenior.or.kr
시흥시목감종합사회복지관	031-403-0110	http://www.mokgam.kr
시흥희망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031-311-6655	https://www.shmedcoop.com
시흥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031-431-0137	http://www.shgapa.org
(주)작은자리온케어	031-316-2732	https://saram210524.modoo.at
보살핌장기요양복지센터	031-404-1339	http://welfarefuture.com
국민건강보험공단 시흥지사	1577-1000	https://longtermcare.or.kr



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 치매환자 대상

- 치매지원서비스: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발급 및 지문등록, 저소득 치매환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재가치매환자 조호물품 제공
- 치매환자쉼터: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경증치매환자로 장기요양서비스 미이용자(대기자 포함), 장기요양서비스 미신청자, 인지지원등급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인지자극프로그램과 돌봄을 제공
- 맞춤형사례관리: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중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되면 좀 더 심도 있는 상담과 지원을 제공

• 치매고위험 어르신 대상

- 인지강화프로그램: 치매조기검진 결과 인지저하자,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은 자를 대상으로 인지훈련프로그램 진행

• 정상군 어르신

- 치매예방프로그램: 치매고위험, 치매진단자를 제외한 정상군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예방관련 인지훈련프로그램 제공
- 치매조기검진: 만 60세이상 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조기발견을 위한 검사 실시

• 가족지원서비스

- 치매 진단 가족을 위한 가족교실 운영, 자조모임 지원, 힐링프로그램 제공, 치매가족 카페 운영

각 지역 보건소에서 치매안심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를 방문 하여 치매에 대해 상담을 받거나 치매검사가 가능한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세요.

시흥시치매안심센터 - 대야·신천센터 031-310-5857
 - 정왕센터 031-310-5930
 - 연성센터 031-310-6825



노인장기요양보험

• 신청대상

-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신청방법

- 인터넷 www.longtermcare.or.kr, 「The 건강보험」 앱, 건강보험공단 지사 내방, 우편, 팩스 등
 ※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 등이 대리 신청 가능(인터넷과 앱으로 대리신청 시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단, 65세 미만자의 최초 신청이나 외국인의 신청은 불가).

•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과 이용 가능 형태

- 장기요양인정 점수는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나타내는 점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심신의 기능 저하 상태를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합니다.

등급	기준		이용가능 급여종류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재가급여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등급	치매환자로 장기요양인정 점수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	
인지 지원 등급	치매환자로 장기요양인정 점수 45점 미만인 자		주·야간 보호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 자료실 급여이용안내 e-book을 참고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시흥지사 팩스 031-229-0542



노인장기요양보험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재가급여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제공
방문목욕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방문간호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방문간호 지시서'에 따라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구강위생 등을 제공
주·야간보호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인지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
단기보호	수급자를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인지훈련도구를 활용한 인지자극활동 제공 및 옷 개기, 식사준비, 개인위생활동 등의 일상생활을 수급자와 함께 수행하며 남아있는 신체·인지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훈련을 제공
기타재가급여 (복지용구)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섬·벽지 지역에 거주,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지급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	
노인 요양시설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영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

주변에 노인학대나 학대가 의심이 된다면 지나치지 말고 연락주세요.

• 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어르신이 보내는 작은 신호, 손끝으로 보내는 소중한 관심. 학대피해가 의심이 된다면 1577-1389로 연락주세요.

노인복지법
제1조의2 4항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게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내새김(노인지킴이) 앱 신고기능

노인학대 신고앱 "내새김(노인지킴이)" 다운로드



위치 기반 신고연계



사진 / 동영상 첨부



익명성 보장



다운로드 바로가기
(QR코드스캔)



다운로드 바로가기
(QR코드스캔)



- 노인학대신고 1577-1389
-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031-683-1389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경제적, 정신적, 신체적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지역사회에서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돕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 대상

- 돌봄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 모든 노인
- 경도인지장애, 알코올 의존, 저장강박, 도박등 위기 또는 집중지원이 필요한 노인
- 각종 재난재해로 인해 긴급지원이 필요한 노인
- 갑작스런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위기로 즉시 개입이 필요한 노인
- 만85세이상 등 법정 보호자(가족)의 특별한 사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 (해외거주, 장거리 거주, 초고령의 자녀 또는 노인인 경우)
- 특별한 경우 65세미만 노쇠현상이 현저하여 특별히 지원이 필요한 자

※대상자 선정 여부는 자세한 상담을 통해 결정됩니다.

● 서비스 내용

- 안전확인(방문상담, 전화상담)
-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지역자원 연계(후원금.품 연계)
- 교육지원서비스 제공(치매예방, 노인성질환, 생활교육 등)
- 여가활동지원서비스 제공(나들이, 문화체험 등)
-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제공(행정지원, 차량지원, 장보기, 병원동행 등)
- 특화서비스, 긴급지원

※ 대상자 선정 유형에 따라 제공서비스가 다릅니다.

● 사업 수행기관

- 시흥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031-431-0137
- 보살핌재가노인복지센터 031-404-1339
- 신청: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지원 대상

만65세 이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또는 ③기초연금 수급자로 아래에 해당되는 노인은 신청가능합니다.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특화 서비스로 유사 중복사업 자격과 관계없이 제공 가능)

단,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자나 가사, 간병 방문 지원 사업 이용자 등 유사 혜택을 받는 분들은 제외됨.

• 제공 서비스

대상자군	대상자
중점돌봄군	월 16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직접서비스 + 연계서비스(필요시) + 특화서비스(필요시)
일반돌봄군	월 16시간 미만 직접서비스 + 연계서비스(필요시) + 특화서비스(필요시)

※ 서비스 제공 시간은 최대 기준이므로 실제 제공시간은 개인의 서비스 필요에 따라 계획될 수 있음.

• 신청 절차와 방법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어르신 또는 그 가족 등이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 전화, 우편, 팩스 등으로도 신청 가능(해당 기관에 제출 사실을 꼭! 확인)

• 구비서류

-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신청서, 신청자의 신분증
- 위임장 및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 (대리 신청 시)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상담하세요!
시흥시청 노인복지과 031-310-6996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독거 노인의 가정에 화재·가스 감지센서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독거 노인 및 장애인 분들이 신속하게 대처하거나 소방서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함.

● 대상

-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 실제로 혼자 살고있는 만65세 이상의 독거노인, 그 외 독거노인 중 상시보호가 필요한 대상
- 노인 2인 가구: 65세 이상 노인 2인으로 구성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인 가구로 한명이 질환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2인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 그 외 기초지자체(시군구)장이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지원내용

- 가정에 화재센서, 활동 감지기, 응급호출기 설치
- 대상자의 안부 및 욕구를 파악하여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시스템 점검 및 사용법 안내, 교육
- 실제 응급상황 여부를 확인하고 사후관리를 진행

● 신청 및 문의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수행기관 시흥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031-504-0157
- 시흥시청 노인복지과 031-310-6996



시흥돌봄SOS사업

독립적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불가피하게 돌봄 공백이 발생한 시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창구

● 대상

- 돌봄이 필요한 아동, 장애인, 어르신(시흥시 전체)

● 자격기준

-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수발을 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

● 서비스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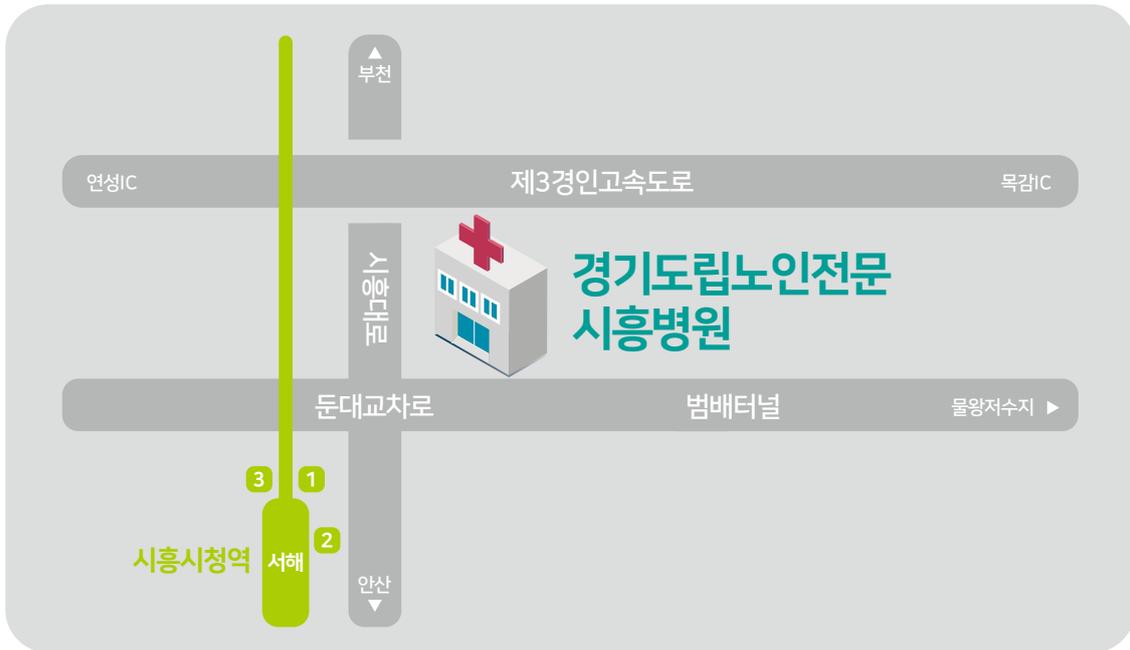
- 일시재가 (연간 최대 60시간)
- 동행지원 (연간 최대 12회)
- 식사지원 (연간 최대 30식)
- 주거편의 (간단한 집수리, 방역, 청소, 세탁)
- 단기시설입소 (연간 최대 14일)
- 1인 연간 지원 한도 금액 : 160만원(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 기준 중위소득 90%이하 가구 전액 지원, 그 외 대상자는 본인부담시 이용가능)

● 이용방법

- 주소지(또는 실거주지)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
시흥시청 복지정책과 031-310-3583

시흥시청 홈페이지 www.siheung.go.kr 에서
「시흥돌봄SOS센터사업」을 참고하세요.

찾아오시는 길



지하철 이용시 서해선 **시흥시청역** ①번출구 도보10분(약600M)

버스 이용시



- 경기도립노인전문시흥병원 정류장 도보2분
- 시흥등기소 도보10분 · 시흥국민체육센터 도보10분

자가 이용시

외곽순환도로 > 도리IC > 연성IC
 서해안고속도로 > 목감IC > 제3경인고속도로(인천공항방향) > 연성IC
 네비게이션에서 "경기도립노인전문 시흥병원" 검색 후 이용하세요.

진료 안내

- 평 일: 오전 09:00 ~ 오후 17:30
- 점 심: 오후 12:00 ~ 오후 13:00
- 토요일: 원무과 업무 17:00까지
- 일·공휴일: 휴진

※ 외래진료는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031-500-7150로 전화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오전 09:00~12:00는 재원환자 회진시간 입니다.